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2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9. 28.

발의자 : 인재근·소병훈·김영호

전혜숙·정춘숙·박정

김상희·김영진·유은혜

기동민·설훈·이인영

양승조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·소비단계에서 부패·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식품에 비해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·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.

또한 정부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검사원의 잣은 교체로 인한 전문성 저하 및 검사물량 과다에 따른 부실검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물의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,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

정 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을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(안 제64조제3항 신설).
- 나.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,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는 재지정을 받도록 함(안 제6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- 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어장·용수·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 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8조제1항 및 제3항).
- 라.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120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).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의 제목 중 “지정”을 “지정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”를 “기준·절차, 업무 범위,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요건·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·절차”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

제68조의 제목 중 “농산물의”를 “농수산물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

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산물의”를 각각 “농수산물의”로, “농산물”을 “농수산물”로, “농지”를 “농지·어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농산물의”를 “농수산물의”로, “농산물에”를 “농수산물에”로 한다.

1의2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
1의3. 국립수산과학원

제120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

6의3. 제64조제5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안정성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산정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4조(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	⑥ ----- -----기준·절차,

<p><u>절차와 업무 범위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</p>	<p><u>업무 범위, 제3항에 따른 변경</u> <u>의 요건·절차 및 제5항에 따른</u> <u>재지정 기준·절차</u> -----.</p>
<p>제68조(<u>농산물의 위험평가 등</u>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<u>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</u>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<u>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·사용하는 농지·용수·자재 등에</u> 잔류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제68조(<u>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</u>) ① ----- <u>농수산물의</u> ----- <u>농수산물---농수산물의</u> ----- <u>농지·어장---</u> -----.</p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의2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<신 설>	1의3. 국립수산과학원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<u>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</u> <u>농산물에</u> 잔류하는 유해 물질의 실태를 조사(이하 “잔류조사”라 한다) 할 수 있다.	③ ----- <u>농수산물의</u> ----- <u>농수산물에</u>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20조(별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	제120조(별칙) -----

<p>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~ 12. (생 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의2.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</u> <u>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</u> <u>니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업</u> <u>무를 실시한 자</u></p> <p><u>6의3. 제64조제5항에 따른 재지</u> <u>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</u> <u>여 안정성검사기관의 업무를</u> <u>실시한 자</u></p> <p>7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